

●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3.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60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외 23명 찬성)
- 나.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가. 안전망 병원은 건강보험 말소 등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무료진료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임.
-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자치단체장이 민간의료기관과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안전망병원의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안전망병원의 사업을 위한 협약대상기관을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필요한 협약대상의 민간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협약대상 민간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라. 더욱이 안전망병원의 사업범위를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특고 등 산업재해보험 대상자의 산업재해보험의 가입율을 높이고 산업재해와 관련한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2조제3호를 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
- 나. 제5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안전망병원이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자치단체장이 민간의료기관과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안전망병원의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최근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필요한 협약대상인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임.
- 이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협약대상 민간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망병원의 사업범위를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등 등 산업재해보험 대상자의 산업재해보험의 가입율을 높이고 산업재해와 관련한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고자 함.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안전망병원의 대상병원 확대와 관련하여

- 현행 조례는 “안전망병원”의 정의를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과 이와 연계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한다고 하여 안전망병원이 무료진료기관과 그 외의 기관(시립병원)간의 연계를 의미함.
- 개정안은 이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공

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망병원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사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u>“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 등과 이와 연계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한다.</u></p> <p>가. <u>민간의료기관(무료)이란 의료보장제도 및 공공의료기관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무료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u></p> <p>나.·다. (생략)</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목과 같다.</u></p> <p>가. <u>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으로 ----- ----- -----</u></p> <p>나.·다. (현행과 같음)</p>

- 현재 안전망병원의 협약기관은 시립병원을 제외하고는 총 5개소임. 도티기념병원이나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이 2017년 폐업한 뒤로는 실제로 무료병원이라기 보다는 푸르메재활의원이나 녹색병원과 같은 공공의료를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의료기관이 안전망병

원으로 협약하고 있음.

의료기관명	소재지	현황	주 진료대상	무료진료건수 (2018년)
다일천사병원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동대문구 서울시립 대로57(전농동) (대표자 최일도)	·설립일 2002 ·병상수 31병상 ·직원 4명	노숙, 행려, 외국인 노동자 외래진료중심	3,025명
성가복지병원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성북구 종암로 191 (하월곡동) (대표자 차진숙)	·설립일 1990 ·병상수 100병상 ·직원 50명	노숙인, 행려환자, 무의탁 자, 영세민, 외국인노동자, 차상위계층, 의료보험체납 자, 호스피스 대상	43,568명
요셉의원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 지회)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6(영등포동) (대표자 유경춘)	·설립일 1987 ·병상수 0병상 ·직원 12명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22,488명
푸르메재활의원 (재단법인 푸르메)	종로구 자하문로 89(신교동) (대표자 김성수)	·설립일 2012 ·병상수 0병상 ·직원 29명	뇌병변, 발달장애, 유전질 환등 발달 지연 아동 대상	
녹색병원 (원진재단)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면목동)	·설립일 2003 ·병상수 324병상 ·직원 421명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교용 노동자	

## 나. 안전망병원의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 개정안은 안전망병원의 사업범위에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 보상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확대하고 있음. 이는 녹색병원 등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산업재해의 예방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이고 산업재해 보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임.
-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산재와 관련한 서비스를 안전망병원에서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자영업자에 대한 유급병가지원 안내와 같은 경우도 안전망병원 등을 통해 홍보와 (수급에 있어 안내 등)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즉, 이들을 포함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안내나 직업병으로 인해 의뢰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이는 의료적인 의미에서의 질병만이 아닌 사회적 요인에 의한 질병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할 수 있음.

### 3 사업의 주요 내용

- 안전망병원의 운영이 체계화 되고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개념과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시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분담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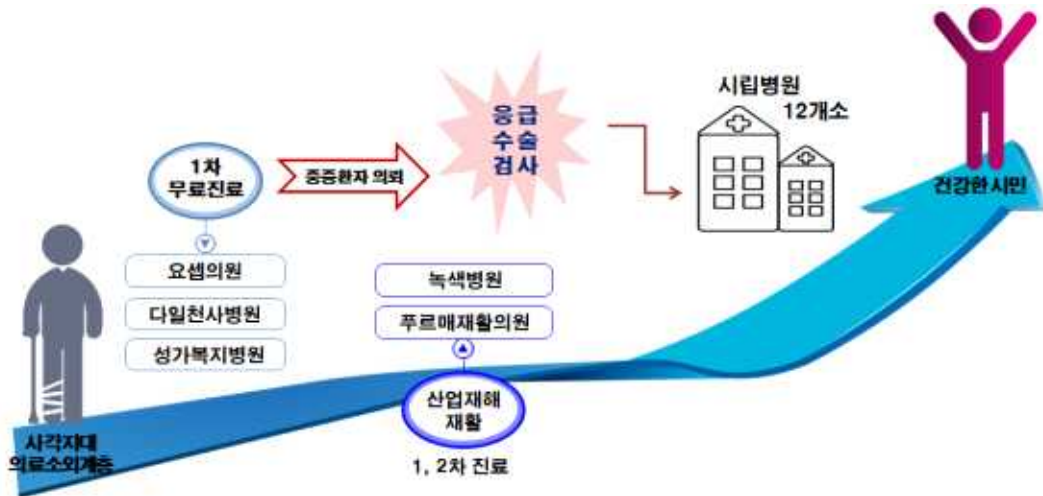
-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1차 진료, 시립병원에서는 2·3차 진료 연계
- 민간의 공공기능 분담(녹색병원 등) : 뇌병변, 발달장애등 발달지연 저소득

어린이에 대한 재활, 노동·산업재해 등 특수질환 의료서비스 제공

- 결핵 및 정신질환, 재활 등 시립병원의 역할 확대 :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의 전원

#### ○ 민간의료기관(무료) 지원

- 민간의료기관(무료) 3개소에 의료인력 지원 : 간호사 등 인건비 지원
- 내구연한 경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시립병원등 사용 의료장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민간의료기관(무료)로의 관리전환
- 동부병원과 계약된 앰블런스 무상 지원 : 성가복지병원에서 저녁 6시 이후 및 공휴일 구급차량 이용



- 이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크게 2개의 축으로 무료진료기관에서 (장비 등의 문제로)진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하여 시립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축과 무료병원은 아니나 공공보건의료의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이 민간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영역을 분담하여 같이 수행한다는 것임.
- 또한 집행부는 2019년부터 진료범위<sup>1)</sup> 및 지원대상을 확대<sup>2)</sup>하는 등의 방향설정을 통해 의료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조례 개정안의 개정방향에 있어 집행부의 사업방향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4 종합의견

- 안전망병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개정은 목적과 방법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할 것임.

1) 진료범위확대 : 재활치료(노인등), 치주질환 동반 의치(틀니), 산업재해 및 직업병

2) 지원대상 확대(녹색병원) : 중위소득 100%이하 산재미가입 특수고용노동자(9군)



-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있어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민간의 비영리 자원과 관 사이의 연계에 있어 동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것임.